

#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모집 공고

## 01. 모집 개요

□ 신청자격 : (가)항목 또는 (나)항목 우수기업

(가) 수출금액('17년) 2백만 US\$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('15년~'17년) 연평균 5% 이상 수출증가 기업

(나) 상시근로자('17년) 5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('15년~'17년) 연평균 2% 이상 고용증가 기업 (상시근로자 기준)

□ 회원기간 : 2019. 1. 1 ~ 2021. 12. 31 (3년)

□ 제공서비스 :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 (동반 3인까지)

※ 타 출입국우대카드(ABTC카드 등)와 동일 서비스

□ 모집인원 : 신청자격 부합자

□ 선정방법 : 신청자격 및 결격여부 적격/부적격 확인

□ 신청 제외자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공공기관
- 「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」에 명기된 사행산업 기업
- 2015. 1. 1일 이후 설립된 기업
- 타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

## 02. 제출 서류



<p>① 출입국우대카드 신청서 1부</p>	<p>첨부1</p>
<p>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*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는 “말소사항포함 법인등기부등본” 제출</p>	<p>필수</p>
<p>③ 사업자등록증 1부</p>	<p>필수</p>
<p>④-(가) 수출실적 확인서류 1부 (‘15년~’17년) - 대한건설협회 또는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해외공사 수주실적증명서 - 직접수출 해당기업은 무역협회(1566-5114)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, 별도 첨부서류 필요 없음</p>	<p>(가)항목 우수기업</p>
<p>④-(나).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- 원천징수 이행확인신고서 각 1부</p>	<p>(나)항목 우수기업</p>
<p>⑤ 납세증명서(기업, 신청인 개인) 및 ⑥ 지방세증명서(기업, 신청인 개인) 각 1부 * 기업의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신청인 개인 국세, 지방세납세증명서 총 4부</p>	<p>필수</p>

### 03. 서류 제출방법 및 일정

□ 업무처리 절차



□ 접수마감 : 2018년 10월 26일(금) 18:00까지

□ 제출방법 : 서류 및 기업정보(Excel양식) 모두 제출

구 분	제 출 처	제 출 방법
신청서류	각 해당 경제단체	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
기업정보	경제단체 홈페이지 E-mail	경제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Excel 양식으로 작성, 전자파일 제출

\*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

※ 각 경제단체는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서류(신청서만 해당) 및 기업정보 취합양식(Excel)를 2018년 11월 2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제출

□ 선정결과 발표 (예정) : 2018년 11월 30일

- 선정기업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한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통보(SMS)

## 04. 결격 사유

- 신청일 현재 납세 및 지방세증명서상에 세금체납(증명서에 “체납 처분유예액”이 있는 경우도 체납에 해당) 있는 자[법인·개인]
-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출입국규제자로 등록된 자[법인·개인]
-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,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[법인] (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)
- 최근 2년 이내 다음의 관세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[법인·개인]
  - \* 관세법 제268조의2, 269조, 270조, 270조의2, 271조, 274조, 275조의2
  - \* 조세범처벌법 제3조
  - \* 외국환거래법 제18조, 27조, 27조의2, 28조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- 법무부장관이 우대카드 발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자 (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지침 제6조)

※ 기업인 선정 이후라도 허위기재사실·결격사항 발생 및 파산/부도가 확인 될 경우 「기업인공향우대서비스」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.  
(결격사항 발생여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 예정임)

## 05. 유의사항

- 가입되어 있는 아래 경제단체 중 반드시 1개 기관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전국경제인연합회	www.fki.or.kr	한국무역협회	www.kita.net
대한상공회의소	www.korcham.net	중소기업중앙회	www.kbiz.or.kr
한국외국기업협회	www.forca.org	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	www.fcas.or.kr
한국수입협회	www.koima.or.kr	한국항만물류협회	www.kopla.or.kr
주한미국상공회의소	www.amchamkorea.org	주한유럽상공회의소	www.ecck.eu

-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시고, 붙임2 「신청서 작성요령 및 참고사항」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신청서는 소관 경제단체장의 확인절차가 있습니다.
- 선정된 기업은 지정된 1인(신청인)에게만 카드가 발급됩니다.
- 본 공고문에 별도의 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,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를 의미합니다.
- 접수마감 후 서비스 시행 중에는 일체의 추가모집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서비스 희망 기업은 반드시 금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추후 인천공항 운영정책 변경 시 본 제도는 회원 만료기간에 관계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(붙임)

1. 신청서 양식 (필수제출)
2. 신청서 작성요령 및 참고사항

(붙임1)

## 출입국우대 카드 신청서

○ 신청사유	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투자자 (선정기관: KOTRA)	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금융투자자 (선정기관 : 금융감독원)
<input type="checkbox"/> 모범납세자 (선정기관 : 국세청)	<input type="checkbox"/> 종합인증우수업체(A.E.O)카드 소지자(선정기관: 관세청)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업인카드 소지자 (선정기관: 국토교통부)	<input type="checkbox"/> 독립유공자 (선정기관: 국가보훈처)
<input type="checkbox"/> 동반성장우수기업 종사자 (선정기관: 동반성장위원회)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창출우수기업종사자 (선정기관: 법무부)
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 (선정기관: 여성가족부)	<input type="checkbox"/>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법인 종사자 (선정기관: 법무부)
<input type="checkbox"/> 출소자고용우수기업 종사자 (선정기관: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)	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예술 후원 인증업체 종사자 (선정기관: 문화체육관광부)
<input type="checkbox"/> 세계인의 날 포상자 (선정기관: 법무부)	

○ 공통기재 사항								
성 명	성(영문)			명(영문)			성 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M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F
생년월일	년	월	일	국 적		연락처		
여권번호				여권 발급일자		여권 유효기간		
주 소 (카드수령지)								
실무담당자	• 성명:		• 부서/직위:			• 휴대 폰:		

○ 추가기재 사항								
법인명			사업자등록번호			전화번호		
대표자명			법인등록번호					
【개인정보 수집 · 이용】			【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】					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	출입국우대 카드 이용 서비스 제공 및 출입국우대 카 드 발급 관련 제반 목적		개 인 정 보 를 제 공 받 는 자	법무부, 카드발급 대행기관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		카드 발급 및 카드 유효성 확인 관련 제반 목적		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출입국우대 카드 유효 기간		제공받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좌 등				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성명, 생년월일, 여권번호 등 신청서류 상의 개인정보		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	좌 등				
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.							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모두 동의하십니까? (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)

**【주의사항】**

1.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출입국 규제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2.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 선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
신청일 Date of application		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/seal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

○ 신청자격 사항 (가), (나) 항목 중 해당되는 하나만 기재)

(가) 수출우수	무역업고유번호			
	수출실적	2015년	2016년	2017년
	직접수출	만 US\$	만 US\$	만 US\$
	해외공사수주	만 US\$	만 US\$	만 US\$
(나) 고용우수	상시근로자수	2015년	2016년	2017년
		명	명	명

○ 결격사유 해당여부

세금체납 (처벌)사실	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	공정거래법 위반사실	관세법·조세범처벌법 위반사실	공고일 현재 범죄(금고이상)사실
유 / 무	유 / 무	유 / 무	유 / 무	유 / 무

위 신청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8년 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 일

신청기업명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         대표자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         직인

---

위 신청기업의 실적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8년 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 일

경제단체명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         단체장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         직인

---

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

(붙임2)

## 신청서 작성요령 및 참고사항

### ○ 신청사유

- 체크되어 있는 “기업인카드소지자 (선정기관: 국토교통부)” 항목으로 신청
-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지침에 따른 분류이며, “기업인카드”는 별도로 없으며 최종 선정 후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제공 예정

### ○ 공통기재 사항

- 성명/ 성별/ 생년월일/ 국적/ 여권정보 : 카드 사용자 정보 기재
  - \* 등기임원에 한하며, 실제로 출입국우대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기재
- 연락처 : 개인 연락처 기재
- 실무담당자 : 신청인을 대리하여 연락 가능한 실무직원 인적사항 및 연락처

### ○ 추가기재 사항

- 법인명 : 사업자등록(법인등록)증에 명기된 “기업명”을 기입
- 대표자성명 :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“대표자 명”을 기입
-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: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
- 전화번호 : 직장 연락처 기재
- 개인정보 관련사항 동의여부 체크
- 신청일 : 신청날짜. 2018년 O월 O일로 기재
- 신청인 서명 또는 인 : 신청인 서명 또는 법인 직인

### ○ 신청자격 사항

- (가)수출우수 또는 (나) 고용우수 중 한 가지 항목만 작성
- 금액 단위는 “만US\$”이며 이하수치는 반올림하여 명기

#### (가) 수출우수

- 무역업고유번호 : 수출분야 신청자 중 “무역업고유번호”가 있는 기업은 기입
- 수출실적 : 2015, 2016, 2017년 직접수출 또는 해외공사수주 금액 모두 기재
  - ▶ 직접수출 : 간접수출을 제외한 한국무역협회에서 인정하는 직접수출금액
  - ▶ 해외공사수주 : 대한건설협회 또는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해외공사 수주 실적증명서상의 해당년도 금액



(나) 고용우수

- 2015년, 2016년, 2017년 해당년도 결산월 원천징수 이행확인신고서에 명기된 연말 정산(A04) 인원으로 기입

○ **결격사유 해당여부**

- 공고문 '04. 결격사유'의 각 항목에 유/무 사항 표시

○ **작성문의처 (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소속 경제단체)**

---

대한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	☎ 02-6050-3880, 3874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9층(우100-743)
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팀	☎ 02-3771-025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빌딩 47층 회원팀(우150-881)
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	☎ 02-2124-3184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(우150-740)
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	☎ 1566-5114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6층(우135-729)
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	☎ 02-3485-8393 서울 강남구 은주로 711 건설회관 4층(우135-701)
주한미국상공회의소	☎ 02-6201-2241
주한유럽상공회의소	☎ 02-725-9915
한국항만물류협회	☎ 02-924-2113
한국외국기업협회	☎ 02-3462-0505
한국수입협회	☎ 02-793-2464
인천국제공항공사 CIP회원관리	☎ 032-741-0015, 0016

---